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 국가핵심기술 확대지정 및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 -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이하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술을 말합니다.

2021. 1. 1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반도체 등 12개 분야에서 기존 69개의 국가핵심기술을 71개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 제8조 제1항)인 ‘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지침’은 ①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하고, ②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신청 대상과 예외사항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 ‘산업기술보호지침’상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보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① 보호구역 설정을 통한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지침 제8조), ②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에 관한 계약 체결 등 전문인력 이직관리(지침 제9조), ③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지침 제10조), ④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 지정(지침 제11조), ⑤ 정보보안시스템 설치·운영(지침 제12조), ⑥ 국가핵심기술의 관련 정보 자체에 대한 보안관리(지침 제13조), ⑦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지침 제14조), ⑧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지침 제14조), ⑨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지침 제15조)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산업기술보호지침’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신청 대상과 관련해서, 수출을 위한 승인·신고 대상과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상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었던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외국기업 등에 국가핵심기술을 매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①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설계·제조상의 결함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 제공, ②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해외 인증, 인·허가를 위한 기술자료 제공, ③ 외국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제소, 소송 대응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자료 제공 등도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신고 대상이 되므로(지침 제17조, 제21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제공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화우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다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각종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에 있어 고객의 어떠한 수요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 다음페이지에 이어서



이광욱 kwlee@hwawoo.com	TEL. 02-6003-7535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LLC)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9층 (우)06164 TEL: 02-6003-7000 FAX: 02-6003-7036 www.hwawoo.com ; www.yoonyang.com
임철근 cglim@hwawoo.com	TEL. 02-6003-7088	
이근우 klee@hwawoo.com	TEL. 02-6003-7558	

[기업법무그룹 소개자료](#)

[지난 뉴스레터 보기](#)